

동두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6-71
----------	------

제출년월일 : 2011. 02. .

제출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재해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재정책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개요

- 목표년도 : 2012년~2021년
- 계획구역
 - 공간적 범위 : 동두천시 전역(8동) 95.66km², 하천 34개소(지방하천 3, 소하천 31)
 - 재해대상 범위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 ※ 대설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별도대책 수립규정으로 제외

나. 주요내용

- ① 기초현황 조사 (일반 및 풍수해 피해현황)
- 토지이용, 지형현황 등 일반현황
 - 토지이용, 하천, 지형, 지질 및 토양, 기상 등 자연현황
 - 재해위험지구, 재해저감시설 등 방재현황
- 풍수해 현황 분석

- 최근 10년간 피해현황 조사
- 주요 호우사상별 풍수해 특성분석 (1998, 1999년 집중호우)

○ 풍수유형별 특성분석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등 재해유형별 분석
- 재해에 따른 저감대책 방향 설정
 - ⇒ 지역적으로 지방하천(신천, 상패천) 등의 주요 하천주변 저지대에 주거지 및 농경지가 위치하여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에 취약
 - ⇒ 불현동, 소요동 등은 전반적으로 경사가 급한 지역이므로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에 취약한 지형특성

②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 31개소

○ 위험지구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재해 (5개 유형)

○ 선정방법

- 개정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의 후보지 선정기준을 토대로 자연재해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의 피해가 잠재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를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
- 위험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성적 혹은 정량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방어능력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지구로서 풍수해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

■ 선정결과

(단위: 개소)

구 분	위험후보지	최종선정	비 고
계	200	31	
하천재해	122	22	
내수재해	28	6	
사면재해	25	3	
토사재해	10	0	
바람재해	15	0	

※ 토사 및 바람재해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구(시설물)가 없는 것으로 조사

③ 저감대책 수립

○ 비구조적 대책

- 풍수해보험 제도 활성화 및 재해지도 작성,
- 재난예경보시스템 개선 등

○ 구조적 대책 (위험지구 개선)

- 하천재해(22개소) : 하천정비 및 교량재가설
- 내수재해(6개소) : 우수관거정비사업 실시 및 펌프장 설치 등
- 사면재해(3개소) : 사면보호공 및 사면 절취 등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 수행
 - 타 분야 계획수립시 반영 및 기존 부문별 계획의 조정 역할
 - 투자 우선순위 고려한 합리적인 시행계획 수립
- 방재제도 및 일반 치수·방재분야 활용
 - 재해예방제도의 계획·기준·평가적 기능을 총괄·조정
 - 구조적 저감대책 및 우선순위 제시, 비구조적 저감대책 강구

3.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가. 추진현황

- 2009. 03. 05 : 과업 착수
- 2010. 02. 10 : 관련 실과장 보고
- 2010. 02. 25 : 경기도 2청 소관 신천수계하천기본계획 반영 등을 위한 과업중지
- 2011. 01. 04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지침 개정
- 2011. 02. 07 : 시 의회 의원 간담회 개최
- 2011. 02. 08 : 과업 재착수

나. 향후 계획

- 2011. 03. : 공청회 개최
- 2010. 03. : 관련 지방행정기관 협의
- 2010. 04. : 경기도 경유 소방방재청 심의 및 승인